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, 제조, 매매,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”를 추가함(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